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심사보고서

2025. 3.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21일,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3.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3.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3.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경태 의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임.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

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제정안은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인사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사요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상설특검법 유형)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개별특검법 유형)이 각각 제시될 수 있는데,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두 개의 유형을 병존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내용, 특별검사 임명절차, 사건의 규모와 소요기간 및 수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범계)

본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사대상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회사명을 추가로 명시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사대상 중 일부를 명확히 함.

8. 심사결과

수정의결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대상 중 일부를 명확히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
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
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
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통하여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허위사실공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개입 또는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1.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주 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 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 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 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조 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가 <u>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u> <u>등을</u>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 거래행위 등을 통해 부정한 이득 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주 문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가 <u>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u> <u>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상장회사와</u> <u>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u> 불공정거 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 혹 사건

원 안	수 정 안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통하여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허위사실 공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 또는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원안과 같음)
11.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원안과 같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주 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통하여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허위사실공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개입 또는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
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1.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